용인 기흥 우방아이유쉘 입주자모집공고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2.18)임청주자격조건이 기간, 내, 지역우선 등의 청주지역조건 한다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분구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지역지구임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18)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세대에 거주하는 제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한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임 ■ 투기 적발자 제외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에 따라 주택공급제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청약 고발일자 3년 이하의 청약에 해당 기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법거래를 알면서 또는 중대한 부동산상의 대해 이해관계자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본 아파트는 간편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모집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 이후에 인터넷은행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거에 의한 민영주택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에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공분양주택에서 실시하되,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배정 추첨은 공공분양주택에서 실시함) ■ 고령자 및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장애 등의 이유로 그내용에 속한 자 및 "청약통장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주택공급신청자를 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되 2층이상 세대에 주거시 배정. 단, 공사상기 업공 정상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마지막자세하는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해제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함은 1층을 일컬어 1층이 없는 경우 최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임대 중인 무주택 근인으로서 주택법 제7조 제2항의 입주자 저축에 2년(24회)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법시행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가주하고 있다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본 ■ 전매금지 및 재임대 제한기간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30조의2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인경우에는 "주택법,제41조 의2 및 "주택법시행령,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 (2016.01.12) 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거 비투기지역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기준주택 당첨자에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하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전매금지 및 재임대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분양의 자격 및 청약 방법 1. 공급금액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주택과 - 4276호 (2015.12.18)로 입주자모집공고 된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사항 이내에 소정절차 제정한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분구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지역지구임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에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영유아 자녀수 1명 이상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주택공급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 용인시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본 -본 주택은 비투기지역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주택공급 신청자의 당첨자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1순위 2순위 모두를 무효 처리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자는 예치금청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소명요건이 청약접수 시점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주택법 제 9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제출 기준일 : 청약 접수 일 부터 3일 이내 1건 이상 청약하되 1인 1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1순위 2순위 모두 무효 처리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법조항 : 주택법 시행령 제 9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2016.01.12) 현재 주택 건설 지역가주자(용인시)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가주신청자보다 우선하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 가주자로 신청하는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경쟁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12.18) 현재 주택 건설 지역가주자(용인시)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 가주자로 신청하는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 경쟁 시 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미리 자동 분류 접수됨 ■ 주택공급 신청자는 주택소유 현황 등 사유 에 의거 해당 주택 공급 신청 시 입력한 주택소유 현황 등에 대해 자동 분류 접수됨 ■ 주택공급 신청자의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12.1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12.1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주택공급신청자를 별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1. 공급금액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주택과 - 4276호 (2015.12.18)로 입주자모집공고 된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07외 13필지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7개동, 총 4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22세대 포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조 및 주택 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공급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1층 우선배정
					주거공용면적			계		특별공급				특별 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면적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15001605 -1	59.958	59A	104	59.958	23.278	83.236	36.628	119.864	36.303	10	10	10	3	33	71
	2015001605 -2	59.962	59B	118	59.962	23.357	83.319	36.631	119.950	36.305	11	11	11	3	36	82
	2015001605 -3	59.986	59C	72	59.986	23.164	83.150	36.645	119.795	36.320	7	7	7	2	23	49
	2015001605 -4	74.951	74A	68	74.951	23.313	98.264	45.787	144.051	45.380	6	6	6	2	20	48
	2015001605 -5	74.951	74B	38	74.951	23.530	98.481	45.787	144.268	45.380	3	3	3	1	10	2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층별 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 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계약시	2차 16.01.29	1차 16.05.30	2차 16.09.29	3차 17.01.31	4차 17.06.29	5차 17.10.30	6차 18.02.28	
59A	1층	5	117,200	120,300	237,500	5,000	18,750	23,750	23,750	23,750	23,750	23,750	71,250
	2층	6	117,200	124,300	241,500	5,000	19,150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72,450
	3층	6	117,200	128,300	245,500	5,000	19,550	24,550	24,550	24,550	24,550	24,550	73,650
	기준층	87	117,200	131,300	248,500	5,000	19,850	24,850	24,850	24,850	24,850	24,850	74,550
59B	1층	6	117,200	120,300	237,500	5,000	18,750	23,750	23,750	23,750	23,750	23,750	71,250
	2층	6	117,200	124,300	241,500	5,000	19,150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72,450
	3층	6	117,200	128,300	245,500	5,000	19,550	24,550	24,550	24,550	24,550	24,550	73,650
	기준층	107	117,200	131,300	248,500	5,000	19,850	24,850	24,850	24,850	24,850	24,850	74,550
59C	1층	4	117,200	120,300	237,500	5,000	18,750	23,750	23,750	23,750	23,750	23,750	71,250
	2층	4	117,200	124,300	241,500	5,000	19,150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72,450
	3층	4	117,200	128,300	245,500	5,000	19,550	24,550	24,550	24,550	24,550	24,550	73,650
	기준층	60	117,200	131,300	248,500	5,000	19,850	24,850	24,850	24,850	24,850	24,850	74,550
74A	1층	2	146,500	137,800	284,300	5,000	23,430	28,430	28,430	28,430	28,430	28,430	85,290
	2층	4	146,500	142,800	289,300	5,000	23,930	28,930	28,930	28,930	28,930	28,930	86,790
	3층	4	146,500	146,800	293,300	5,000	24,330	29,330	29,330	29,330	29,330	29,330	87,990
	기준층	58	146,500	149,800	296,300	5,000	24,630	29,630	29,630	29,630	29,630	29,630	88,890
74B	1층	2	146,500	137,800	284,300	5,000	23,430	28,430	28,430	28,430	28,430	28,430	85,290
	2층	4	146,500	142,800	289,300	5,000	23,930	28,930	28,930	28,930	28,930	28,930	86,790
	3층	4	146,500	146,800	293,300	5,000	24,330	29,330	29,330	29,330	29,330	29,330	87,990
	기준층	58	146,500	149,800	296,300	5,000	24,630	29,630	29,630	29,630	29,630	29,630	88,890

※기준층 : 4층부터 각 동의 최상층까지임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선납할인율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개산됨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의 할인율(선납일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한에 입주하지 않거나 늦게 입주하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동사업

• 2009.04.01. 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기재되형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변화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사항 이내에 소정절차 제정한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분구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지역지구임 • 상기 공급금액는 마이스윈스앤파이 이외 오피스텔 및 상가 제외한 아파트 및 주택 이외